

남베트남 패망시기 한국군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이 신 재**

1. 머리말
2. 북베트남의 침공과 피난민 문제 등장
3. 한국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 결정
4. 해군 십자성작전 전개
5. 맺음말

1. 머리말

1975년 4월 30일 베트남공화국(The Republic of Vietnam, 이하 남베트남)¹⁾이 패망했다. 베트남전쟁의 종식을 결정했던 파리 평화

* 이 논문은 2016년 5월 19일 개최된 ‘십자성작전 재조명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유익한 심사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1) 이 논문에서는 1975년 4월 30일 패망직전까지 존재했던 베트남공화국(월남, 越南)은 ‘남베트남’으로, 베트남민주공화국(월맹, 越盟)은 ‘북베트남’으로, 한국군이 참전했던 전쟁의 명칭은 ‘베트남전쟁’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당시 남베트남의 수도 사

협정이 체결된 지 2년 만이자 1975년 3월 북베트남의 무력침공이 본격화된 지 2개월도 못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남베트남은 1956년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패망직전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양국의 교류 저변에는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 그리고 분단국이면서 동시에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에 베트남전쟁 당시 32만 명에 달하는 한국군 파병은 양국관계를 마치 ‘혈맹’ 수준으로까지 올려놓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한국정부에게 패망 위기에 처한 남베트남의 위기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것은 양국관계의 ‘특수성’ 뿐만 아니라 당시 전 세계의 관심이 베트남에 집중되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또한 베트남 현지의 전황(戰況) 속에서 위협에 처한 대사관과 교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한국정부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했다.²⁾

그러나 한국정부의 대응은 전투부대를 파병했던 이전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당시 남베트남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구호물자 제공과 피난민 수송지원에 국한되어 전개되고 있었다. 가장 적극적이었던 미국도 의회의 반대로 군대파견과 군원(軍援)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³⁾ 여기에 남베트남도 한국정부에 전투부대의 파병이 아닌 피난민 수송과 구호물자 제공만을 요청

이공(Saigon)에 있었던 한국대사관 등은 당시 정부문서에 표기된 대로 주월대사, 주월대사관으로 표기한다. 아울러 베트남 인명 및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현지 발음에 가깝게 한글로 옮겨 적는다. 대표적 예로는 티우→티에우, 나트랑→냐짱, 퀴논→뀌년, 푸콕→푸꾸옥 등이다.

- 2) 1975년 당시 헌법(1972.12.27 개정 제8호) 제8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 3) 물론 남베트남은 미군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미 의회의 반대로 미군이 올 수 없게 되자 사이공에서는 미국인들을 공격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일도 발생했다. “미 상원 군사위 표결 대월군원 부결”, 『동아일보』, 1975년 4월 18일; “부유층 ‘탈출 사이공’ 소동”, 『동아일보』, 1975년 4월 24일; “무법·혼란의 수라장… 사이공”, 『동아일보』, 4월 30일.

하고 있었다.⁴⁾ 따라서 한국정부는 남베트남의 요청과 국제사회의 지원현황을 고려해 남베트남 지원의 성격을 ‘순전히 인도주의 차원’⁵⁾으로 한정하고 정책을 추진했다.

한국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정책은 해군에 의해 수행되었다. 해군 상륙함(Landing Ship Tank, 이하 LST)을 이용해 구호물자 전달 및 전시 피난민 수송, 그리고 교민철수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75십자성계획’으로 명명되고 ‘십자성작전’으로 불리던 당시 해군의 작전은 한국정부가 최초로 실시했던 해외 난민구호 및 교민철수 활동이었다. 이 작전으로 한국정부가 제공한 구호물자가 남베트남에 무사히 전달되었고, 한국교민과 베트남 ‘난민(難民, refugee)’⁶⁾ 등 1,335명이 부산으로 무사히 도착했다.⁷⁾

한국정부는 이들 난민을 위해서 난민구호소를 설치해 운영했다. 1977년 이후 보트피플(boat people)로 불리던 베트남 난민들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부터는 유엔의 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별도의 난민구호소를 건립해 1993년 2월까지 운영했다.⁸⁾ 이런

-
- 4)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 제3장 가. 남베트남의 지원 요청 부분을 참조할 것.
- 5) 일반적으로 인도주의(人道主義)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국경, 종교적 차이를 초월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속박과 제한,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려는 사상을 말한다.
- 6)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에 의하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 하는 자”를 말한다. 2012년 제정된 대한민국 난민법도 난민의 정의를 난민협약의 정의를 일부 용어를 수정해 사용하고 있다.
- 7) 1,335명의 국적별 세부현황은 한국국적 354명(남베트남인 중 한국 국적자 35명 포함), 남베트남 국적 953명, 기타 28명이다. 그러나 총 인원수 1,335명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1,341명이나 1,364명 등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1975년 5월 20일 해군본부에서 외교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해본작작 0970-1136(1975.5.20) “과월 특수수송지원작전 경과보고서 제출”.
- 8)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적십자운동 100년사』(서울: 대한적십자사, 2006), 366-367쪽.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도 한국에서의 난민구호활동 사례로 베트남 보트피플의 제3국 정착

일련의 난민보호 활동은 한국정부에겐 중요한 경험이 되기에 충분했고, 이것이 해군의 십자성작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부분이라 하겠다.

그러나 당시 한국정부와 군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은 남베트남 패망 이후 4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 부산에서 운용된 난민구호소에 관한 연구들은 일부 있지만, 남베트남 패망 당시 한국정부의 정세인식과 지원정책 결정과정, 그리고 해군의 작전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⁹⁾ 해군사(海軍史)의 일부로 십자성작전의 전개과정이 편찬되거나 일부 작전 참가자들의 수기나 회고가 일부 언론에 소개되는 정도였다.¹⁰⁾ 그 결과 한국정부와 군의 첫 해외 교민철수 및 난민 구호활동에 대한 고찰과 평가는 제대로 시도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베트남 패망당시 한국정부가 전개했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에 대해 당시 사료를 바탕으로 입체적인 조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파리 평화협정 체결 및 한국군 철군

지원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http://www.unhcr.or.kr/unhcr/html/001/001004001001001.html>(검색일: '16.3.15).

- 9) 부산에 설치되었던 난민구호소의 운영에 관한 연구로는 정인섭, “한국에서의 난민 수용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제16권 1호(2009), 197-222쪽; 노영순, “부산입항 1975년 베트남난민과 한국사회,” 『사총』, 제81호(2014), 329-364쪽; 노영순, “바다의 디아스포라, 보트피플: 한국에 들어온 2차 베트남 난민(1977-1993)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제7권 2호 (2013), 75-108쪽 등이 있다.
- 10) 십자성작전이 언론에 처음 소개된 것은 해군 LST가 부산에 도착한 1975년 5월 13일이었다. “목숨을 건 결사적 항해,” 『동아일보』, 1975년 5월 13일. 이후 십자성작전이 해군의 역사서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81년 해군본부에서 편찬한 『해군사 8집』에서다. 그리고 2014년 해군에서 편찬한 『베트남전쟁과 한국해군작전』에는 관련내용이 보다 상세히 수록되었다. 그러나 십자성작전에 관한 연구논문 등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십자성작전 참가자의 수기로는 당시 810 함장이었던 박인석 (예)대령의 월간지 기고문이 대표적이다. “비록, 1975년 ‘십자성작전 참여 함장의 증언 上·下’, 『월간조선』, 2013년 4·5월호 314-333, 314-335 쪽. 2014년 7월에서 JTBC에서 남베트남 패망을 다룬 다큐멘터리 「사이공 1975」(총 4부작)에서 십자성작전과 당시 한국대사관의 주요 활동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베트남상황과 북베트남의 침공에 따른 남베트남의 위기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과정과 정부 지원정책의 수행자로서 해군의 작전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정부와 군의 첫 해외 교민 및 난민구호 활동을 제대로 규명하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2. 북베트남의 침공과 피난민 문제 등장

가. 파리평화협정 체결 이후 베트남 정세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베트남전쟁의 종식을 알리는 평화협정이 조인되었다. 6·25전쟁의 정전협정이 쌍방의 군사령관 간에 체결된 것과 비교할 때 남북 베트남과 미국, 베트남 임시혁명정부(PRG)의 외교장관 간에 체결된 평화협정은 전쟁종식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차원의 합의서였다.¹¹⁾

파리 평화협정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협정에는 서명 후 60일 이내에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²⁾ 이에 따라 1973년 3월 23일 주일한국군의 마지막 후발대 118명이 베트남을 떠나면서

11) 이 협정의 정식 명칭은 “베트남의 전쟁종식과 평화복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이다. 파리 평화협정은 서문과 본문 9개 장, 총 23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4개의 부속의정서가 있다. 베트남 임시혁명정부(PRG)는 1969년 6월 남베트남에 만들어진 민족해방전선(NLF)의 임시정부로 The Provisional Central Government of Vietnam의 약칭이다.

12) 평화협정 제5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Within sixty days of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there will be a total withdrawal from South Vietnam of troops, military advisers, and military personnel……(후략).

한국의 베트남참전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¹³⁾

그러나 ‘전쟁종식’과 ‘평화복구’의 이름을 담고 있는 파리 평화협정은 체결 직후부터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했다. 협정 체결 이후 농촌지역에서는 한 달 평균 1,000명의 남베트남 정규군이 전사할 만큼 전투가 빈번했다.¹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군사적 충돌이 빈번했던 원인 중 하나는 협정의 내용에 있었다. 협정에 남북 베트남의 군사적 경계선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협정에서는 전쟁종식 후 양측의 경계선을 전쟁 이전의 경계선인 북위 17선을 경계로 삼는 것이 아니었다. 협정 제3항(b)은 협정 체결당시 ‘남베트남 내의 양측 당사자들은 현 지역에 머문다’고 명시함으로써 남베트남 지역에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가 차지했던 지역의 지배권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남베트남은 이른바 ‘얼룩말의 무늬’처럼 곳곳이 임시혁명정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새 경계선 획정에 대해 남베트남의 강력한 반발도 있었지만, 미국은 남베트남에게 방위공약을 약속하면서 협정의 서명을 요구했다.¹⁵⁾ 그러나 이후 새로운 경계선 문제가 베트남 혼란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말았다.

당시 남베트남에 남아있던 북베트남 병력의 규모에 대해 이세호

13) 당시 한국 국방부는 평화협정의 체결 가능성을 상정하고, 한국군 철군계획인 ‘개선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협정 체결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철군을 시행해 1973년 3월 20일 서울운동장에서 ‘파월 개선장병 환영대회’ 및 ‘주월한국군사령부 해체식’을 개최했다. 또 1973년 5월 21일 국회는 전(前) 주월사령관 직책으로 이세호 제3야전군 창설준비위원장을 불러 “파월국군 귀국보고”를 받는다. “파월국군 귀국보고”, 『제86회 국회의원회록 제3호(1973.5.21)』(대한민국국회사무처).

14) 마이클 매클리어 저, 유경찬 역, 『베트남: 10,000일의 전쟁』(서울: 을유문화사, 2002), 562쪽.

15)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던 티에우 대통령에게 700만 불을 제공하고, 닉슨(Richard M. Nixon)이 남베트남에 대한 방위공약을 담은 개인적 친서를 티에우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후에 공개되기도 했다. 『동아일보』, 1975년 1월 14일; VNW-04279, 1975년 4월 23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

주월사령관은 국회보고에서 30만 명이라고 추정했고,¹⁶⁾ 마이클 매클리어(Michael Maclear)는 15만 명으로 추산했다.¹⁷⁾ 패망직전까지 남베트남 참모총장을 역임했던 카오 반 비엔(Cao Van Vien)도 남베트남에 남아 있던 북베트남의 병력은 약 10개 사단이었고, 지방 공산군부대 병력의 60-80%가 북베트남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¹⁸⁾

협정 체결 이후 미국은 협정에서 허용한 50명의 군사고문단 이외에 약 7,000명의 예비역 군인들을 미 국방부와 의 계약을 통해 남베트남에 잔류시켰다.¹⁹⁾ 협정이전까지 존재했던 주월 미 군사원조사령부(USMAC-V: US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를 대신해 ‘동부 펜타곤(Pentagon)’으로 불리던 사이공의 주월 미 국방무관실(DAO: Defense Attache Office)이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원조와 군사고문 역할을 담당했다.²⁰⁾ 남베트남 총참모부와 미 국방무관실은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에 대비한 계획도 수립했다. 또 미국은 태국 낙혼파놈(Nakhon Phanom)에 있던 미군 지원사령부와 남베트남 총참모부간 직통선도 가설하며²¹⁾, 남베트남에 대한 방위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점점 더 혼란 속에 빠지고 있었다.

16) “파월국군 귀국보고(1973.5.21)”, 『제86회 국회회의록 제3호』 (대한민국국회사무처), 31쪽.

17) 마이클 매클리어 저, 유경찬 역, 앞의 책, 554쪽. 매클리어는 1959년 베트남 취재를 시작해 베트남전쟁에 관한 저술과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바 있는 런던출생의 캐나다 언론인이다.

18) Cao Van Vien, *Indochina Monographs-The Final Collapse*, (Washington D.C.: Central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3), p.19.

19) 마이클 매클리어 저, 유경찬 역, 앞의 책, 563쪽.

20) 『동아일보』, 1975년 4월 28일.

21) Cao Van Vien, *Op. Cit.*, pp.45-46.

나. 북베트남의 무력침공과 피난민 발생

종전 이후 지속되던 남베트남에서의 혼란은 1974년 12월 북베트남의 무력침공으로 본격화되었다. 12월 13일 북베트남은 사이공 북쪽 푸억롱(Phuoc Long) 성(省)을 무력으로 공격했다. 그리고 3주 만인 1975년 1월 7일 성도(省都) 푸억빈(Phuoc Bihn)을 점령했다.²²⁾ 당시 북베트남의 푸억롱 공격은 남베트남 군대에 대한 방어 태세를 시험함과 동시에 미국의 반응을 엿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남베트남은 무기력했고, 미군의 개입은 없었다. 이후 북베트남은 자신감을 갖고, 본격적인 무력침공을 전개했다.

1975년 3월 10일 북베트남은 남베트남 중서부에 위치한 부온마투옷(Buon Ma Thuot)에 대한 공세를 개시했다. 이곳은 공격을 받은 지 5일 만인 3월 15일 북베트남에 함락되었다.²³⁾ 이후 중부의 플레이쿠(Plei Ku)와 콘툼(Kon Tum)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지역을 확장해 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남베트남 티에우(Nguyen Van Thieu) 대통령의 ‘오판’은 전세를 일격에 악화시키고 말았다. 티에우는 일부지역의 전황이 악화되자 현재의 전력으로는 전 국토를 방어할 수 없다며,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방어에 집중하기 위해 군대를 재배치했다. 즉, 중부 고원지대를 포기하고 사이공지역에 대한 방어를 강화한 것이었다.²⁴⁾ 티에우의 이 결정으로 북위 17도선 지역부터 남쪽으로 4개 군단으로 분할되어 있던 남베트남은 I·II군단지역을 상실하고 영토의 절반을 잃게 된다. 결국 사이공을 포함한 III군단 지역과 사이공 남쪽의 메콩강(Mekong River) 지역인 IV군단 지역만 남게 되었다.

이때부터 남베트남의 혼란은 급격히 악화된다. 대통령의 결정으

22) 마이클 매클리어 저, 유경찬 역, 앞의 책, 563쪽.

23) 위의 책, 573쪽.

24) Cao Van Vien, *Op. Cit.*, pp.77-78; 마이클 매클리어 저, 유경찬 역, 위의 책, 575쪽.

로 중부의 항구도시인 다낭(Da Nang)이 고립되었고, 이곳으로 철수하던 군인과 피난민 등 최소 100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이 집결하면서 대혼란이 초래되었다.²⁵⁾ 남베트남이 한국정부에 피난민 수송을 위한 선박을 요청한 것도 고립된 다낭의 피난민을 안전한 곳으로 수송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립된 지역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차례로 함락되기 시작했다. 3월 26일 중부지역 고도(古都)인 후에(Hue), 3월 30일 다낭, 4월 1일 꾸년(Quy Nhon)이 함락되었다. 4월 2일에는 남베트남 공수부대가 확보하고 있는 공항을 제외한 냐짱(Nha Trang)지역도 함락되었다. 그 결과 4월 초 남베트남의 전체 44개 성 중 16개성을 북베트남에 내주었다. 이는 남베트남 전체 면적의 65-70%이자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였다.²⁶⁾

이후에도 북베트남의 진공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고, 급기야 4월 21일 티에우 대통령은 사임했다. 이후에도 2명의 대통령이 더 바뀌면서 사이공 방어와 북베트남과의 협상을 추진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 속에서 1975년 4월 30일 10시 20분 마지막 대통령인 즈영반민(Duong Van Minh)은 무조건 항복을 발표했고, 남베트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5) 1975년 3월 30일 주월 한국대사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역별 피난민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다낭 120만 명, 꾸년 15만 명, 투이호아 10만 명, 냐짱 20만 명, 기타 지역 20만 명이었다. 이들 피난민 중 약 50만 명은 베트남의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이어진 1번 도로를 따라 사이공을 향해 남하 중이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고한 전문(1975.3.30.)”, 외무부 동남아과, 『월남피난민 수송 및 구호원조(CA0005021)』 (1975). 이하 CA0005021로 약칭.

26) 외무부 아주국, “재월한국인 현황(1975.4.8)”(국방부 자료집).

3. 한국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 결정

가. 남베트남의 지원 요청

북베트남의 무력침공에 대해 남베트남 정부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1975년 1월 3일 정부성명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1975년 1월 7일 주한 월남대사 치에우(Pham Xuan Chieu)는 김동조 외무장관을 예방해 1월 3일자 남베트남 정부성명을 설명하고,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다. 이 자리에서 김동조 장관은 한국정부의 지원 대책을 고려해 보겠다고 답한다.²⁷⁾ 김영관 주월대사도 외무장관과 국무총리에게 보낸 1월 11일자 전문에서 남베트남의 요청을 전달하고, 한국적십자사가 식량 및 의약품 등의 구호품 수집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²⁸⁾ 이 전문은 1월 13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도 전달된다.²⁹⁾ 1975년 2월 7일에는 주한 월남대사가 외무부장관을 면담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티에우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 친서의 내용은 북베트남의 파리평화협정 위반에 대해 한국정부의 지지를 요청하는 것이었다.³⁰⁾

한국정부에 대한 남베트남의 요청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3월 23일 남베트남의 단(Phan Qunag Dan) 부수상은 다낭지역에 고립된 전시 피난민 수송을 위해 선박 및 항공기 지원을 요청했다.³¹⁾

27) “면담요록(1975.1.7)”(국방부 자료집).

28) “1975년 1월 11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CA0005021).

29) “월남전재민 구호-1975년 1월 13일 외무부에서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전문”(CA0005021).

30) “티에우 월남대통령 친서 전달(1975.2.13),” 외무부 동남아 2과, 『한·월남 정무일반(1972-75)』. 박정희 대통령 이에 대해 지지 성명 대신 친서를 회신해 남베트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박 대통령의 친서는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티에우 월남 대통령 친서에 대한 대통령 각하 회신(안)(1975.2.24)”; “1975년 3월 27일 주월대사의 외무장관 보고,” 외무부 동남아 2과, 『한·월남 정무일반(1972-75)』.

31) “1975년 3월 25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CA0005021).

3월 24일에는 남베트남 외무성에서 또 다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고,³²⁾ 3월 26일 주한월남대사는 이를 노신영 외무부차관에게 전달했다. 당시 주한월남대사는 후에와 다낭에 고립된 약 6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을 캄란(Cam Ranh) 등 남베트남 내 안전지대로 수송할 수 있도록 LST, 병원선 또는 화물선 등 최소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선박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60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 수에 비추어 수송기간은 1개월 반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송수단과 지원기간도 제시한다.³³⁾

남베트남의 계속된 지원요청을 받고 한국정부의 대응도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당시 한국정부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현지 한국 대사관 및 교민의 안전한 철수를 진행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베트남의 지원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나. 한국정부의 대응

1) 주월한국대사관 비상계획 수립

외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현지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에게 부여된 의무이다. 이점은 1975년 베트남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대사관 직원과 교민을 안전하게 철수시킬 것인가? 언제 대사관을 폐쇄할 것인가? 이것이 한국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특히 여권만료,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현지 범법행위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는 출국수속이 제한되는 교민 철수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었다.

32) 3월 24일자 남베트남 외무부 성명은 전황 소개와 함께 모든 평화, 자유, 애호국들에게 북베트남의 침략을 규탄하고 남베트남 정부 및 국민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33) “면담요록(1975.3.26)”(CA0005021).

1975년 1월 베트남에서 전황이 발생하자 주월대사관은 자체 ‘비상계획’을 작성했다. 당시 비상계획에는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는 대사관직원 및 교민을 약 1,9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철수 수단으로 항공기를 고려했다.³⁴⁾ 주월대사관의 비상계획을 접수한 외무부는 비상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함³⁵⁾과 동시에 교민철수를 위한 항공기 파견 가능성을 민간항공사와 국방부에 검토 요청한다.³⁶⁾ 당시 국방부는 군용기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항공기 철수 대상인원으로 파악한 947명³⁷⁾을 C-54 군용기 7대가 총 5회 운항한다는 것이었다.³⁸⁾

이후 주월대사관은 외무부의 지시를 받고 철수계획을 보완한다. 보완된 비상계획에는 상황전개에 따라 준비단계로부터 1~3단계까지 총 4단계로 구체화했다. 철수 수단은 항공기를 상정했지만, 항공기별 탑승인원을 고려해 필요한 항공기 소요대수도 산정했다.

34) 주월대사관이 작성한 비상계획에 따르면 당시 남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대사관 직원 및 교민 등 1,899명이었지만, 여기에는 외환은행지점 등 한국의 공공기관 직원의 수는 빠진 상태였다. “1975년 1월 23일 외무부 기획관리실장이 아주국장에게 보낸 협조문,” 국방부, 『십자성작전관련 자료집』(서울: 국방부, 2015), 14-16쪽. 이 자료집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외교부 자료를 수집·선별하여 발간한 것이며, 이하 ‘국방부 자료집’으로 표기함.

35) “1975년 1월 29일 외무부장관이 주월대사에게 보낸 전문”(국방부 자료집).

36) “1975년 1월 29일 외무부장관이 주월대사에게 보낸 전문”(국방부 자료집). 이 전문은 1월 16일자 주월대사가 보고한 비상계획(월총 200-1/1975.1.16)에 대해 추가 보완 및 구체적 사항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1975년 1월 23일 외무부 기획관리실장은 아주국장에게 협조문(기예1211-39) “주월남대사관 비상계획 수립”을 보내 동 계획에 대한 검토 및 항공사 및 국방부와 사전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37) 947명은 1975년 2월 기준 인원이며, 세부내역은 대사관 직원 및 가족 114명, 수자원사절단, 농업사절단, 의료단, 코트라, 외환은행 지점 등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 90명, 상사 주재원 및 여행자와 그 가족 50명, 일반 취업자 및 가족 550명, 영주교포 및 가족 143명이었다.

38) 이것은 C-54기 1대에 약 30명의 교민을 태우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국방부는 군용기 파견을 위해서 일본, 대만, 필리핀, 남베트남과 영국통과 및 착륙인가에 대한 협조, 그리고 항공료 지원 등을 외교적으로 선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상황악화 시에 대비해서 대만 또는 필리핀에 사전 전개하는 방법도 검토하였다. “주월대사관 비상철수 계획-국방부측 의견”(국방부 자료집).

탑승인원이 400석인 B-747기의 경우에는 3대, 205석의 DC-8기종은 6대가 필요했다. 사이공 공항이 폐쇄될 경우를 대비해 선박을 이용하는 방법도 예비로 검토했다. 이것은 육로 또는 해로로 사이공 남쪽 항구인 붕따우(Vung Tau)항까지 이동 후 정부에서 보낸 선박을 비롯해 가용한 선편을 이용한다는 것이었다.³⁹⁾ 그러나 이때의 선박이 군함인지 민간 용선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수준이었다.⁴⁰⁾

이런 가운데 4월에 접어들면서 전황이 더욱 악화되자 주월대사관은 비상계획에 따라 철수 1단계를 시행한다. 이것은 대사관 직원 가족을 4월 12일까지 철수시키고 현지에 있던 정부산하 각 기관의 직원들 중 잔류할 필요가 없는 인원들은 조기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일반 교민들에 대해서도 자력으로 출국이 가능한 인원들은 조기 출국할 것을 지도해 나갔다. 경제적으로 극빈한 교민들을 위해서 본국에 특별예산지원도 요청했다.⁴¹⁾

당시 주월대사관의 가족 등 철수지시는 물론 남베트남 전황의 악화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국의 요구도 있었다. 4월 3일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담당 참사관이 외무부 미주국장을 찾아와 미국측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하였다. 미국으로서는 약 5,700명에 달하는 남베트남 내 미국인 철수문제로 한국 교민 철수를 지원할 여력이 없으니 한국정부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⁴²⁾ 또 남베트남의 전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만큼 한국정부가

39) 외무부 동남아과, “주월대사관 비상계획(1975.2.6)”(국방부 자료집).

40) 사이공에서 붕따우까지 이동 후 정부 선박을 이용하는 계획은 추후 십자성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사이공에서 붕따우까지 이동하는 것은 선박이 사이공의 뉴포트 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변경되는 정도이다.

41) “1975년 4월 2일 12:00 주월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전문”; “주월대사관과 정부산하 각 기관 및 일반 민간인의 철수에 관하여(1975.4.5)-외무부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문건”(국방부 자료집).

42) “주월대사관과 정부산하 각 기관 및 일반 민간인의 철수에 관하여(1975.4.5)-외무부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문건”(국방부 자료집).

추진해오던 남베트남 피난민 수송 및 구호원조계획을 계속 추진해 달라고도 했다.⁴³⁾

베트남에서 직원가족 등에 대한 철수가 시작되면서 국내에서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대사관 및 교민의 안전한 철수, 그리고 남베트남에 대한 지원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1975년 4월 4일 외무장관은 긴급보고 안건으로 “월남비상철수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한다.⁴⁴⁾ 이 계획에는 ‘정부수송편의 지원’ 항목에 ‘민간항공기에 의한 자비퇴거를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기, 군수송기 또는 해군함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여기서 전세기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전세(專費)를 말했다. 군수송기는 이미 국방부로부터 검토를 받았던 C-54기 7대를 말하며, 해군함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내용은 없다. 이것은 이 무렵 2명의 조사반이 남베트남 현지에서 조사 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계획의 ‘행정지원’ 항목 중 국방부 조치사항은 “공관 및 교민보호를 위한 경비소대 파견 검토(함정 파견시 동승)”가 있었다. 당시 계획에 나온 베트남 현지 한국인의 규모는 총 861명을 파악되었다.⁴⁵⁾

그러나 당시 철수계획 시행에서 가장 크게 직면한 문제는 출국이 어려운 교민들이었다. 이들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① 경제적으로

43) “월남 피난민 긴급철수 및 구호원조 문제(1975.4.4)-외무부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문건”,(CA0005021). 미국은 4월 19일 주한 미국대사를 한국 외무부로 보내 남베트남인들의 비상철수 작전을 계획 중이고, 이들을 위한 미군기지에 수용하는 것에 대해 한국정부의 동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의 요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8개국이었다. 4월 21일 한국 국무총리는 미국대사에게 미국의 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면담요록(1975.4.19/4.21),” 외무부 동남아 2과, 『한·월남 정무일반(1972-75)』.

44) 외무부, “월남비상철수계획(1975.4.4)”(국방부 자료집).

45) 이는 세부적으로 대사관, 외환은행, 코트라, 재보협공사, 농업사절단, 의사사절단, 수자원사절단, 탄마이 직업훈련소 자문단, 코콩지구 용역단의 직원, 가족 등 191명, 대한항공, 경남기업 등 6개 진출기업 직원 및 가족 119명, 일반교민 551명이다.

어려워 항공권 구매가 어려운 교민, ② 한국여권 만료 및 남베트남 당국에 세금체납 등으로 정상 출국이 어려운 교민, ③ 교민 중에서 베트남인과 결혼 또는 동거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있지만, 이들이 베트남 국적으로 베트남 당국에 여권 발급 등 출국 수속을 밟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였다. 일부 교민은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도 있었다.

당시 주월대사는 이런 이유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교민의 규모를 약 800명으로 추산했다.⁴⁶⁾ 물론 당시 이런 문제는 한국만 겪는 문제는 아니었다. 상당수의 미국인도 한국교민들과 유사한 점 때문에 출국수속이 지연되고 있었고, 필리핀도 유사한 상황이었다. 다만 같은 경우는 그런 인원이 너무 많아 별도의 조치를 포기한 상태였다.⁴⁷⁾

주월대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에 수송편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현지교민들에게 일단 개인적으로 출국수속을 마칠 것을 독려하고, 본국정부가 주한 월남대사관과 협조해 이 문제를 남베트남정부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4월 7일에는 대사관 주도하에 교민회와 협조하여 ‘재월한국인 철수대책본부’를 조직하고, 한국정부에서 지원한 수송수단을 이용해 귀국하기 위한 인원 및 재산, 출국계획 등을 추진했다.⁴⁸⁾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출국이 어려운 교민 출국문제는 쉽사리 풀리지 않았고, 결국 정부가 보낸 해군 LST를 이용해 귀국하게 된다.

2) 정부의 남베트남 전시 피난민 지원책 검토

한국정부는 대사관과 교민철수 이외에 남베트남에서 요청한 전시 피난민 지원책도 함께 검토해야만 했다. 이미 1975년 1월 남베트남

46) “1975년 4월 7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서 보내온 전문”(국방부 자료집).

47) “1975년 4월 11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고한 전문”(국방부 자료집).

48) “1975년 4월 7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서 보내온 전문”(국방부 자료집).

정부의 지원요청을 받은 바 있고, 악화되는 전황 속에서 그 요구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남베트남의 구체적인 지원 요청은 3월 23일 처음 등장했다. 단 부수상이 본인의 관저로 사이공주재 외국 공관장과 외국기관 대표를 초청해 다낭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50만 명의 전시 피난민 수송을 위해 선박 및 항공기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월대사는 현재 남베트남에서 작업 중인 한국 선박의 지원 가능성을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답변한다.⁴⁹⁾

한국정부도 주월대사관을 통해 전해지는 전황과 남베트남 정부의 계속된 요청을 어떤 형태로든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외무부는 당시까지의 베트남 상황과 남베트남의 요구사항을 포함해 “월남정부의 피난민 수송수단 원조요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3월 26일 대통령께 보고한다.⁵⁰⁾ 이것은 이전까지 베트남 상황을 관망하며 대사관 축소 조치 등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한국정부의 남베트남 지원이 검토와 실행의 단계로 변화되는 시점이다. 3월 28일자 보고에는 현재까지 각국의 지원현황과 남베트남 정부의 요구사항, 그리고 한국정부의 지원 관련 검토사항을 포함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남베트남이 한국정부에 LST 1척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⁵¹⁾

남베트남이 한국에 LST를 요청한 것은 베트남 중부지방에 고립된 피난민 수송을 위해서는 항공기보다 선박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49) “1975년 3월 25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CA0005021).

50) “월남정부의 피난민 수송수단 원조요청(1975.3.26)-외무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CA0005021).

51) “월남 피난민 수송수단 원조 요청(1975.3.28)-외무부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문건”(CA0005021). 보고서에는 미국이 이미 피난민 수송을 진행 중이고 1일 1만 명씩 수송할 경우 약 35만 명 수송에 3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대만도 C-130이 없어 선박을 요청 중이며, 필리핀은 LST 1척이 우선 1회 난민 수송 후 원래 목적인 장비를 신고 귀국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항공기는 이·착륙을 위해 활주로가 있어야 했지만 이러한 시설이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또 비용면에서 항공기보다 선박이 적게 들기 때문이기도 했다.⁵²⁾ 이와 관련하여 남베트남 적십자사 총재도 한국이 해군함정을 보내줄 경우 적십자기를 게양하고 피난민만을 수송하는 인도적 목적에만 사용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⁵³⁾

그러나 한국정부의 지원결정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한국정부는 남베트남 지원의 성격과 규모, 방법을 고민하면서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3월 29일 외무부는 해외주재 대사관에 주재국의 남베트남 지원에 관한 정보수집을 지시한다.⁵⁴⁾

당시 종합된 각국의 남베트남에 대한 지원수준과 방법, 그리고 원조의 성격은 대체로 일치했다.⁵⁵⁾ 각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한 정해 현물 등 구호품과 금전을 지원하는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었다. 전달수단은 남베트남에 대한 직접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으로 양분되었다. 미국, 필리핀, 호주, 대만, 영국 등은 항공기와 선박을 보내 자국민 철수 및 전시 피난민 수송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철수 대신 현지 잔류를 지시

52) “1975년 3월 26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CA0005021). 당시 국제적십자사는 미국을 제외한 수송수단 지원국에게 적십자 비용으로 실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었다. “1975년 3월 25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CA0005021).

53) “1975년 3월 27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CA0005021).

54) 3월 29일 외무장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총 17개국에 전문을 보낸다. 전문의 내용은 ‘정부에서 긴급 참고하고자 하니 월남 피난민 수송 및 구호를 위하여 주재국 정부가 그간 어떠한 내용의 원조 공여를 결정하였는지, 만약 검토 중인 경우에는 어떠한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늦어도 3.31(월) 10시까지 본부에 필착도록 보고 바란다’는 것이었다. 제네바 대사에게는 국제적십자사의 구호활동 계획에 대한 조사 보고 지시를 하달했다. 외무장관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4개국 해외주재 대사에게 보낸 전문(1975.3.29,17:40); 외무장관이 주인도/주서전대사에게 보낸 전문(1975.3.29,17:30); 외무장관이 주제네바 대사에게 보낸 전문(1975.3.29., 17:30)(CA0005021).

55) 해외주재 한국대사들이 조사해 보낸 전문의 내용은 CA0005021 문서철 참조.

하기도 했고, 일부 국가는 북베트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북베트남을 지지하는 국가도 있었다. 각국의 남베트남 지원사항은 이후 한국정부의 지원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반영된다.

다. 한국정부의 지원 정책 결정

한국정부의 지원정책 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상황은 두 가지였다. 첫째, 현지 대사관과 교민들을 언제, 무엇을 이용해서 철수시킬 것인가였다. 특히 정상적으로는 출국이 어려운 교민문제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다. 둘째, 어떤 성격과 규모, 수단으로 남베트남을 지원할 것인가였다.

각국의 남베트남 지원 상황을 파악한 한국정부는 3월 31일 내부적으로 한국정부의 지원 성격과 수준을 결정한다. 정부는 남베트남 지원의 성격을 “순전히 인도적 고려”로 한정하고, 그 방법으로 구호품의 전달 및 난민 수송을 위해 해군 LST를 보내기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원조 방법 등의 협의와 현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반을 남베트남 현지에 파견한다. 또 정부의 이 결정은 주월대사 및 주한월남대사에게도 전달된다.⁵⁶⁾

한국정부가 해군 LST를 보내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남베트남의 계속된 요청과 주월대사의 의견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 항공기로는 출국이 어려운 교민을 데려오기 위한 측면, 남베트남에 구호품 전달 수단, 남베트남 적십자사가 선박에 대한 유류 및 인건비 지원방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내린 결정이었다. 이미 미국 이외에도 대만, 영국, 필리핀 등의 LST 파견결정도 영향을 미쳤다.

LST파견을 위한 조사반은 김대용 준장(한국함대 참모장)과 이문학

56) “1975년 3월 31일 18:50 외무장관이 주월대사에게 보낸 긴급전문”(CA0005021).

중령(해군본부 작전참모부 작전담당관) 등 해군장교 2명으로 편성되었다. 4월 2일 사이공에 도착한 조사반은 도착 직후 남베트남 단 부수상 겸 보건사회부장관을 만나 현지 상황 및 원조 요청사항을 청취했다. 당시 남베트남은 한국 조사반에게 피난민 수송을 포함해서 난민구호 목적으로 선박파견, 피난민 집단수용소로 결정된 푸꾸옥(Phu Quac)⁵⁷⁾ 섬에 수용시설 건설 협조, 의료 및 식량지원 등을 요청했다. 조사반은 구호물자 관련 업무 협의차 보사부를 방문했고, 수송관련 업무참고차 미국 해군수송선단장(MSC)의 벤톤(Benton) 소장과 남베트남 해군참모총장을 만난다.⁵⁸⁾ 이들은 당초 10일 일정으로 출국했지만, 주월대사의 LST 조기 파견 요청 등을 받고 태국 방콕을 거쳐 4월 5일 귀국한다.⁵⁹⁾ 사이공 체류시간은 약 31시간정도에 불과했다. 조사반은 귀국이후 곧바로 해군본부에서 ‘십자성계획’이라는 명칭의 계획을 수립해 4월 7일 국방부에 보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75십자성계획’으로 명명했다.⁶⁰⁾

정부는 4월 8일 개최된 제27차 국무회의에 “월남공화국 전시난민구호 원조방안(안)”을 상정한다. 해군 LST을 이용한 남베트남 지원계획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40분간 개최된 이날 국무회의에는 총 4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⁶¹⁾ 시간상으로 볼 때 별다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무회의에 원조방안 계획을 제출한 부서는 경제기획원이었다. 안건에 기술된 ‘제안이유’는 남베트남에 전시난민 후송을 위한

57) 푸꾸옥 섬은 캄보디아에 인접한 섬으로 베트남전쟁시기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던 곳이다.

58) “1975년 4월 2일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 “1975년 4월 3일 김대용 준장이 해군참모총장에게 보낸 전문”(CA0005021).

59) “1975년 4월 3일 김대용 준장이 해군참모총장에게 보낸 전문”(CA0005021).

60) 해군본부, 『베트남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20쪽.

61) 의정 1331-417 “국무회의 상황보고 및 회의록 송부”(1975.4.12) (나라기록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 검색일 2015.12.31).

수송단 파견, 의료진 파견, 구호물자 전달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다. 세부방안으로는 약 45일간 약 2~3만 명의 난민 해상수송지원과 구호지원물자(식량·피복류, 의료품 및 개인용품) 지원이었다. 해상수송단의 구성은 국방부에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구호용 원조물자와 함정수송단 경비 등 총 410만 불 어치가 사용되었다.⁶²⁾

이로써 정부차원의 남베트남 지원계획이 결정되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 사항을 주월대사와 주한월남대사에게 통고했다.⁶³⁾ 또 같은 날인 4월 8일 언론에도 발표해 각 언론사에서 보도했다.⁶⁴⁾ 이후 4월 9일 해군 LST의 출항 이후 외무부는 해외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남베트남 주재 각국 대사관의 철수와 폐쇄에 관한 정보수집을 지시하고, 지속적인 상황파악에 주력한다.⁶⁵⁾

4. 해군 십자성작전 전개

정부의 남베트남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결정된 이후 그 이행

62) 의안번호 제265호 「월남공화국 전신난민구호 원조방안(안)」 (1975.4.8).

63) 당시 정부가 주월대사에게 보낸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월남의 전신난민을 후방지역으로 긴급 후송하기 위한 수송선단과 난민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진, 식량류, 피복류, 개인용품, 의료품 등 미화 410만 불 상당의 긴급 원조 물자 및 용역을 무상 제공키로 하였음. “1975년 4월 8일 외무장관이 주월대사에게 보낸 전문”(국방부 자료집).

64) “각의 의결, 월남에 20억원 어치 제공. 난민수송선단 파견도”, 『동아일보』, 1975년 4월 10일. 이 발표는 당시 김동조 외무장관이 언론에 직접 정부결정을 발표한 것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수송선단의 규모와 파견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65) 해군 LST 출항 직후 외무장관은 미국 등 15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전문을 보내 각국의 남베트남 주재 대사관 동태 및 철수상황 등에 대한 조사 보고를 지시한다. “1975년 4월 9일 13:45, 외무장관이 해외주재 한국대사에게 지시하는 전문”, 『1975년 4월 베트남상황 악화와 각국의 주재공관 철수 정보』 (HB2747). HB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료관리번호임.

은 해군에게 부여되었다. 당시 해군은 1975년 4월 7일 국방부에서 작성한 약칭 ‘75십자성계획’에 따라 파견 준비를 진행했다.⁶⁶⁾ 당시 해군 십자성작전은 시기별로 ①부산항 출항과 사이공 뉴포트 도착 ②구호물자 전달 및 교민·난민 탑승 ③푸꾸옥 섬 하역과 남베트남 패망 후 귀국 등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표 1>는 해군 수송선단의 일자별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표 1> 해군수송선단의 일자별 주요 활동

일 자	주 요 활 동
4.6(일)	• LST 2척(810·815함) 부산항 도착(13:00)
4.7(월)	• 구호물자 적재(4.7, 04:00~4.9, 09:30) • 815함상에서 해군 참모총장에게 출국신고(15:00)
4.8(화)	• 해군 참모총장 시찰(18:50)
4.9(수)	• 부산항 출항(13:00)
4.21(월)	• 붕따우 외항 도착/투묘 ⁶⁷⁾ (15:00) * 기관고장으로 2일 지연도착 • 주월무관 정영순 대령 외 4명 협의차 내방(16:00)
4.22(화)	• 남베트남 장교 편승(05:30) • 붕따우 출항→사이공 뉴포트 입항(12:00) • 815함상에서 한국정부 구호물자 전달식(훈장수여)
4.23(수)	• 구호물품 하역/남베트남정부의 요청물자 적재(08:00~)
4.26(토)	• 교민/피난민 탑승 개시(11:00) • 출항(810함 18:00, 815함 19:10)
4.27(일)	• 붕따우 외항 도착/투묘(19:00)
4.28(월)	• 붕따우 출항(08:00)
4.29(화)	• 푸꾸옥 외항 도착/투묘(08:00)/ 567명 하선
4.30(수)	• 만조 이용 접안 시도, 실패(08:00), 제한적으로 하역 진행 • 남베트남 패망(10:20) • 월맹정부 성명, 외국선박 50해리 영해 밖으로 이동 경고 • 하역작업 중단 후 출항(11:00)
5.13(화)	• 부산 외항 도착/투묘(06:30), 부산항 접안(09:00) • 인원, 물자 하역(~ 5.16, 10시)
5.16(금)	• 진해 귀항/분대 해체

* 출처 : 해군본부 작전참모부, 『해군사』 제7집(대전: 해군본부, 1981), 452-453쪽, 542-548쪽; 해본작작0970-1136(1975.5.20) “파월 특수수송지원작전 경과보고서 제출”.

66) 국방부, “대월 난민 수송선단 군수지원 지시 및 대월구호물자 선적계획(75 십자성 계획)”, (1975.4.7).

67) 투묘(投錨) :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 닻을 내림

가. 부산항 출항과 사이공 뉴포트 도착

경제기획원에서 작성한 남베트남에 대한 정부지원 계획에서 국방부가 조치할 사항은 구호물자 준비와 수송을 위한 ‘해상수송단’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원조계획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 ‘75십자성계획’⁶⁸⁾에 따라 4월 6일 부산항에 해군 LST 2척(810함, 815함)⁶⁹⁾을 접안시켜 구호물자 선적 작업을 시작했다. ‘파월특수수송지원분대’⁷⁰⁾(이하 수송분대)로 명명된 수송단은 사령관 권상호 대령을 포함해 총 269명(장교 25명, 부사관 149명, 병사 95명)이었다. 이 중에는 해병 1사단에서 지원받은 30명의 기동타격대(QRF)도 각함에 15명씩 동승했다.⁷¹⁾

구호물품 선적완료 후 4월 9일 낮 1시 두 척의 LST로 구성된 수송분대는 부산항을 출항했다. 목적지는 대만해협을 지나 4월 19일 20시 봉파우에 도착하는 것이었다.⁷²⁾ 그러나 수송분대는 항해 도중

68) 국방부, “대월 난민 수송선단 군수지원 지시 및 대월 구호물자 선적계획(75 십자성계획)”(1975.4.7).

69) LST 2척은 계봉함(LST-810함), 북한함(LST-815함)이었다. 편의상 810함, 815함으로 표기함.

70) 이 분대의 명칭은 문서마다 상이하다. 『해군사』 제7집에는 ‘파월특수수송분대’, 당시 해군본부 인사명령서에는 ‘특수수송지원분대’, 1975년 5월 20일 해군참모총장이 외교부에 보낸 「작전결과보고서」에는 ‘한국 해군 파월 특수수송지원분대’라고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는 공식결과보고서와 인사명령서에 기술된 ‘특수수송지원분대’로 표기한다.

71) QRF(Quick Reaction Force)는 기동타격대, 또는 신속대응군 등으로 불린다. QRF는 주월대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1975년 4월 2일 12:00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국방부 자료집).

72) “1975년 4월 11일 18:00 외무장관이 주월대사에게 보낸 전문”; “1975년 4월 11일 국방부장관(군수차관보 전결)이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전문”; “75 십자성 계획-국방부장관(군수차관보 전결)이 외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문서(1975.4.11)”(국방부 자료집). 그러나 동 문서에서 목적지는 현지 전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변동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 당시 외무장관은 사이공 입항여부에 대해서는 주월대사가 수송선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1975년 4월 11일 18:00 외무장관이 주월대사에게 보낸 전문” 당시 810함의 박인석 함장은 출항 시 지시받은 목적지는 다낭이었으나 베트남으로 가는 도중 전황이 급변해 다낭→나

기관고장으로 인해 이를 지연된 4월 21일 15:00 붕따우에 도착한다. 도착 이후 현지에 파견된 국방무관 및 해군연락장교와 협의해 사이공의 군항인 뉴포트(New Port)로 목적지를 변경한다. 그리고 4월 22일 05:30분 남베트남 장교가 탑승한 가운데 붕따우를 출발해 사이공강을 따라 이동, 이날 12시 사이공의 뉴포트에 무사히 입항한다.

나. 구호물자 전달 및 교민·난민 탑승

뉴포트 항에 도착한 수송분대는 4월 22일 16:00 구호물자 전달식을 갖는다. 815함상에서 개최된 전달식에는 주월대사를 비롯해 한국대사관 직원 및 교민회 간부 등이 참석했고, 남베트남측은 구호부 차관 외 각 부처 및 각 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물자전달식에서는 남베트남 정부에서 수송분대 사령관과 함장, 그리고 대사관 직원 등 8명에게 남베트남 정부의 훈장(사회복지장)을 수여했다.⁷³⁾

구호물자 인도식 개최는 수송분대가 한국을 출항하기 전부터 언급되고 있었다. 당시 전문에 따르면 수송분대의 출항 전인 4월 9일 09:40분 주월대사는 외무장관에게 ‘기항지가 사이공항으로 될 가능성이 많으며, 사이공항으로 입항토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전문을 보냈다. 이 전문에서 주월대사는 아측이 원하면 인도 시 간소한

짱→붕따우로 변경되었다고 했다. “박인석 전 810함장 인터뷰(2015.5.8)”(국방부 자료집).

73) “1975년 4월 22일 18:20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국방부 자료집). 당시 훈장 수여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장 1급 김대용 해군준장, 이문학 해군중령(이상 조사반으로 사이공에 갇던 인원) 사회복지장 2급 권상호 해군대령, 정홍석 해군중령, 박인석 해군중령, 이윤도 해군중령(이상 수송분대 사령관, 참모장, 함장), 김창근 2등 서기관, 김기원 공보관(이상 주월대사관 직원) 주월대사는 이날 훈장수여식이 4월 22일 오전 남베트남 측에서 급작스럽게 통보했다고 보고했다.

행사(ceremony)를 갖겠다는 남베트남 측의 입장을 전했다.⁷⁴⁾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인도식은 주월대사의 판단 하에 시행하되 현 상황에 비추어 간단히 하라고 통보한다.⁷⁵⁾ 한국정부가 전달하는 구호물자는 인도식 이후인 4월 23일 08시부터 하역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해군 LST는 왜 최초 계획대로 봉따우항에서 물자를 전달하지 않고 사이공의 뉴포트까지 간 것일까? 그리고 왜 굳이 인도식 개최를 요구한 것일까? 해군 입장에서도 봉따우에 물자를 하역하는 것이 안전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미처 출국하지 못한 한국교민을 데려와야 했기 때문이다. 자력으로 출국이 가능한 교민들은 항공기 등을 이용해 출국한 상태지만 미처 출국하지 못했거나 항공기 등으로 출국수속을 밟을 수 없는 교민들을 태워오기 위한 것이었다. 사이공의 교민들을 120여 km 떨어진 봉따우 항까지 이동하는 것에 많은 제한요소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그러나 한국측은 교민수송 계획에 대해서 남베트남측에 언급하지 않았다.⁷⁶⁾ 주월대사는 교민수송을 위해 해군 LST를 사이공의 뉴포트까지 들어오도록 요구했고, 구호물자 전달이라는 별도 행사도 요구했지만 교민 수송에 대해서는 함구하였다. 이점은 주월대사의 일종의 ‘비책’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남베트남 정부는 주월대사의 생각과는 달랐다. 그들은 구호물품 제공과 함께 봉따우에서 자국 피난민을 꾸꾸옥 섬으로 수송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주월대사가 구호품 전달식을 구실로 해군 LST를 사이공 뉴포트까지 오게 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양측의 이견은 이때부터 수면위로 등장한다. 주월대사는 물자하역 후 교민을 태우고 나가려 했지만 남베트남 정부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남베트남 측에서는 한국 교민들이 정상적인 출국절차를

74) “1975년 4월 9일 09:40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고한 전문”(국방부 자료집).

75) “1975년 4월 11일 18:00 외무장관이 주월대사에게 보낸 전문”(국방부 자료집).

76) “김영관 전 주월대사 인터뷰(15.5.8)”(국방부 자료집).

거칠 것을 요구했다. 오히려 자국민들과 일부물자를 푸꾸옥 섬으로 1회 수송해 줄 것을 한국측에 요구했다. 남베트남 정부는 만약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교민의 안전철수를 방해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무렵 남베트남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한국대사관을 찾아와 자신들의 철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⁷⁷⁾ 이에 대해 주월대사는 남베트남 정부와 협상을 거쳐 타협안을 도출하는데, 그것은 남베트남 피난민과 물자를 푸꾸옥 섬에 1회 수송해주고, 이때 한국 교민도 함께 태워 푸꾸옥 섬으로 보내겠다는 것이었다.⁷⁸⁾

결국 현지 주월대사와 해군 수송분대는 협의 후 남베트남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교민들을 승선시키기로 결정한다. 이 협상으로 세금문제 등으로 감옥에 수감 중이던 한국교민들도 함께 탈출할 수 있었다.⁷⁹⁾ 주월대사는 남베트남 국민들 중 친미파와 친한파는 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생각하고, 당시 대사관 청색 커튼을 이용해 리본을 만들어 푸꾸옥 섬에 내릴 사람과 한국으로 갈 사람을 각각 A·B·C그룹으로 분류했다.⁸⁰⁾

4월 22일 사이공 뉴포트에 도착한 해군 LST는 남베트남 피난민과 물자, 그리고 한국교민을 함께 싣고 4월 26일 18시 815함이 먼저 출항한 뒤, 이어서 19시 10분 810함이 출항했다.⁸¹⁾ 두 척의

77) 그들은 전 주한월남대사, 월남 정보부 정보분석국장, 대사관 고문번호사, 외무성 직원 등 이른바 고위직이면서 친한파들이었다. 외교부는 이들을 미측에 협조하거나 이것이 불가할 경우 아측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자만 선별, LST에 탑승 귀환케 하라고 주월대사에게 지시한다. “월남인들의 긴급 피난요청”(국방부 자료집).

78) 해군본부, 『베트남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34쪽.

79) “이문학 전 해군중령 인터뷰(‘15.5.8)”(국방부 자료집). 이문학 중령은 당시 정부 조사반으로 사이공에 갔으며, 십자성작전시에는 대사관에서 연락장교 임무를 수행했다.

80) “김영관 전 주월대사 인터뷰(‘15.5.8)”(국방부 자료집); 해군본부, 『베트남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35쪽.

81) 당초 한국해군은 4월 26일 1400 출항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민들의 집합 지연과 남베트남측의 교민 출국 거부, 대사관 물품 탑재 지연 등으로 예정보다 출항이 늦어졌다.

LST에 탑승한 인원은 총 1,902명이었다.⁸²⁾

다. 푸꾸옥 하역과 남베트남 패망 후 귀국

사이공강을 야간 항해로 빠져나온 해군 LST는 4월 27일 봉따우 외항에 도착했다. 봉따우항에 남베트남 국민 및 물자를 내려놓고자 했으나 상황은 좋지 못했다. 남베트남과의 약속대로 푸꾸옥 섬으로 가고자 했지만 한국 해군참모총장은 이를 불허했다.⁸³⁾ 이런 가운데 4월 27일 남베트남 정부에서도 사전에 약속한 피난민을 다 태우지 않고 출항한 것에 대해 한국 LST를 나포하겠다는 경고도 보내왔다.⁸⁴⁾ 결국 한국 수송분대는 본국의 지시를 거부하고 남베트남과의 약속대로 푸꾸옥 섬으로 향했고, 4월 29일 08:00 푸꾸옥 외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현지 조석표(潮汐表) 등 정보의 부재로 항구에는 접안하지 못하고 해상에서 소형선박을 이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남베트남 피난민과 일부 물자의 하역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4월 30일 10시 20분 남베트남의 항복과 외국 선박은 50해리 영해 밖으로 이동하라는 공산정부의 경고방송을 듣고 작업을 중단한 채 공해상으로 긴급 이동한다.⁸⁵⁾ 이후 부산항을 목적지로 항해를 시작해

82) 당시 사이공 뉴포트 항에서 한국해군의 LST에 탑승하는 한국교민과 월남 피난민의 사진은 당시 국내언론에도 보도되었다. 『동아일보』, 『매일경제』, 1975년 4월 28일자. 그러나 당시 사이공 현지의 한국일보 안병찬 특파원은 이 사이공발 기사에서 ‘월남 피난민을 실은 해군 선박이 한국으로 향해 출발했다’고 보도하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는 주월대사관에 ‘당분간 목적지인 한국이 보도되지 않도록 보안조치’하라고 지시한다. 그 이유는 남베트남에 중립대국이 수립될 경우 남베트남 국민을 한국으로 철수시킨 것을 비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1975년 4월27일 20:00 주월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국방부 자료집).

83) 4월 27일 08:00 한국 해군 참모총장은 훈령을 통해 푸꾸옥 수송을 불허한다는 전문을 보내왔다. 해군본부, 『베트남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41쪽.

84) 박인석, “비록, 1975년 ‘십자성작전 참여 함장의 증언 下’, 『월간조선』, 2013년 5월호 316-317.

5월 13일 부산항에 도착한다. 이때 해군 LST에 탑승한 인원은 총 1,335명이었다. 임무를 마친 해군 수송분대는 5월 16일 진해에 귀항해 해체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남베트남 패망당시 한국정부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과 이를 이행했던 해군의 십자성작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십자성작전은 남베트남 패망당시 한국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실시한 교민 구출 및 해외난민구호 활동이었다. 비록 현지 체류 교민 전체를 데려오지 못했지만⁸⁶⁾,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인도주의적 정책결정을 군을 통해 실행했다는 점은 정부와 군의 협조체계를 통한 비전투원소개작전(NEO: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의 중요한 선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해군 LST와 이후 각 화물선 등을 타고 한국에 오게 된 베트남 난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구호활동은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첫 난민구호소 운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베트남 보트피플(Boat People)의 국내 입국 증가로 1977년부터는 새로운 난민구호소를 건립해 유엔 난민기구(UHCHR)의 경비지원을 받아 1993년

85) 해군본부, 『베트남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47쪽. 주한 월남대사관은 1975년 5월 17일자로 대사관을 폐쇄한다. “전 주한월남 및 크메르 대사관과 관원에 대한 대우에 관한 건의(1975.5.27),” 외무부 동남아 2과, 『한·월남 정무일반(1972-75)』.

86) 1975년 6월 기준 남베트남에 잔류하고 있는 한국인 중 사이공주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사무소에 등록된 한국인은 총 208명으로 파악되었다. 외무부, 『공산월남 현황(75.4.30 이후)』 (1976.6).

2월까지 운영했다.⁸⁷⁾ 국내에 한국정부가 주체가 되어 운영했던 해외 난민수용소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이때의 경험은 한국이 국제적 난민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노하우(Know-How)를 쌓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⁸⁸⁾

그러나 정부의 십자성작전 추진과정에는 몇 가지 문제점도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향후 한국정부가 유사한 사례에 접했을 때 참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기여 여기에 기술해 본다.

첫째, 교민철수의 수단과 방법, 국가의 책임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남베트남 패망 시 문제가 된 것은 자력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교민 철수였다. 현지 불법체류자, 철수 불희망자, 한국교민의 현지인 가족, 범법자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 등 자력으로 출국이 어려운 교민들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효과적인 철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의 교섭 방법, 나아가 어느 선까지 현지 자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강제력이 부여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파견부대에 대한 지휘체계상의 문제이다. 십자성작전에 파견된 해군 수송분대는 본국의 군 지휘체계와 현지대사의 2중 지휘를 받았다. 부산항 출항부터 사이공 도착까지 지휘권 이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교민과 피난민 탑승, 사이공 출항과

87) 해군 LST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한 이들은 구 부산여고 건물(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1가 53번지)에 설치된 난민구호소에 입소해 한국정부의 보호를 받았다. 1975년 말까지 해군 LST와 한국선적 화물선을 타고 국내에 도착한 한국교민과 베트남 난민은 총 1,562명이었으며, 이중 584명은 국내에 정착했고, 977명은 연고를 찾아 해외로 이주했다. 1977년부터는 해운대구 재송동에 새로운 난민구호소를 건립해 운영했다.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적십자운동 100년사』, 366-367쪽; 정인섭, 앞의 논문, 201쪽.

88) 물론 1977-1989년까지 국내에 입국한 보트피플 중 단 1명도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제3국으로 송출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난민정책은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정인섭, 앞의 논문, 204쪽. 그러나 이후 한국은 1992년에 이르러 국제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1993년에는 난민법을 제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난민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붕따우 및 푸꾸옥 섬의 항해 및 하역과정에서 현지대사와 파견부대 지휘관, 그리고 본국의 지휘체계 간 이견이 돌출되기도 했다.⁸⁹⁾ 당초 파견부대에 부여된 임무수행을 강조하는 본국의 군 지휘체계와 현지의 변경된 상황에 따른 대사의 파견부대에 대한 요구가 상충했던 것이다. 비록 한국정부에서는 현지대사에게 현지에서의 지휘권한을 위임했지만, 실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선도 초래되었다.

따라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동일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공간적, 임무적 차원에서 지휘체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지 대사(관)-외무부, 파견부대(장)-국방부의 이원화된 지휘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정확한 정보수집과 평가를 통해 정보오란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남베트남 패망 당시 외교부는 정부의 지원이 결정되기 이전에는 해외 주재 대사관을 통해 각국의 반응과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수집에 집중했다. 이후 해군 십자성작전의 전개이후에는 남베트남 주재 각국 대사관의 움직임 및 폐쇄시기에 관한 정보수집에 주력했다. 이것은 외교부 고유의 당연한 업무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의 대사관 폐쇄 등의 정보가 수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정부는 4월 9일 LST 2척을 보내 놓고 사실상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 LST가 사이공에 도착하는 4월 21일까지 약 10여 일간을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물론 남베트남과의 외교관계 속에서 대사관 폐쇄 등

89) 본국 해군참모총장과 한국함대사령관은 사이공 뉴포트에서의 하역 및 적재과정, 붕따우 항 하역 및 푸꾸옥 섬 항해 등에 대해 상황의 위험을 지적하고 귀국을 지시했으나, 수송분대 사령관은 본국의 군 지휘계통 지시가 아닌 현지 대사 또는 현지 상황에 따라 분대를 지휘했고, 결과적으로 군 지휘계통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 물론 여기에는 현지 대사가 전직 해군참모총장이라는 다소 특수한 경우였음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조기에 단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에 대한 정보의존과 일부 정보 오판도 있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국교민의 철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고, 한국 외교관이 베트남 공산정권에 억류되는 초유의 사건으로 이어진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 한국정부가 LST를 파견한 후 약 10여 일간의 시간동안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사전에 검토했던 항공기를 보내는 노력도 기울였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당시 미국 이외에도 대만은 항공기를 보내 자국민을 태워오고 있었다.⁹⁰⁾ 혹은 베트남 인접 국가인 태국이나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한국 교민 수용시설에 대해 검토하고 준비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현재 전 세계의 난민 수는 1,950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 비호신청자, 귀환민, 자국내 실향민, 무국적자 등 유엔난민기구에서 보호대상으로 지정한 대상은 5,950만여 명에 달한다.⁹¹⁾ 탈냉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국제 분쟁 속에서 난민의 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인도적 구호활동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 또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⁹²⁾

90) 남베트남의 참모총장이었던 카오 반 비엔에 따르면, 사이공의 탄손누트(똌션넛) 공항은 4월 28일까지 야간엔 공수, 새벽엔 중단하는 식으로 잘 진행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4월 29일 부터는 포격 및 폭격을 받아 공중철수는 중단되었다고 했다. Cao Van Vien, *Op. Cit.*, p.148.

91) 『UNHCR Global Report 2014 연례보고서』 (<http://www.unhcr.or.kr/unhcr>, 검색일: 2016.4.5).

92) 인도주의적 간섭, 또는 인도적 개입이란 타국의 주민을 비인도적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 『21세기 정치학대사전(하)』(서울: 아카데미아-리서치, 2002), 1903쪽. 이에 대해 연구들로는 성재호, “인도주의와 인도적 간섭”, 『인도법논총』, 제10-11호(1991), 237-250쪽; 양순창,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문제”, 『국제정치연구』, 제13집 1호(2010), 131-152쪽 등의 연구가 있다.

이점에서 앞으로 한국정부와 군의 국제적 역할은 더 많이 요구될 것이며, 1975년 해군의 십자성작전은 유사시 참고할 만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향후 십자성작전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더 발전된 연구성과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원고투고일: 2016.4.6, 심사수정일: 2016.5.17, 게재확정일: 2016.5.23.]

주제어 : 월남, 남베트남, 사이공, 한국정부, 한국군, 인도주의, 난민,
십자성작전, 75십자성계획, 비전투원소개작전, 상륙함

<ABSTRACT>

The humanitarian relief activities of the Korean Forces during the period of the South Vietnam's collapse

Lee, Sin-Jae

This study is a research on the humanitarian relief activities of the Korean government around the South Vietnam's collapse period.

At that time, The government of ROK was received request by the South Vietnam government. And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support the policy for South Vietnam. But Korea government policy was limited to purely humanitarian level. These are as follows. First, transferring to South Vietnam of aid goods, second, transport support for the refugees, third, support for withdraw of the Korean residents abroad and embassy.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policy was performed by the Navy. The Navy had organized squad which was consisted of two landing ship(LST), and the Squad was dispatched for South Vietnam. It was called with a "75 Sipjasung plan" or "Sipjasung operation".

The result of operations, aid goods were delivered safely to South Vietnam, and it arrived 1335 persons including the Korean residents abroad and Vietnamese refugees at Busan port safely.

This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NEO) was the first case of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Forces in Korean history. But related study is not proceed until recent. "Sipjasung operation" have a significance as the first overseas NEO case. In the future it seems to need further study.

Key words : Vietnam, South Vietnam, Saigon, Korea, Korean forces, Humanitarian, Refugee, Sipjasung Operation, 75 Sipjasung Plan,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NEO), Landing Ship Tank